

위크루트 통합서비스 계약서

20 년 월 일

| 구 분 | 위 탁 자 | 수 탁 자 |
|-----------|-----------|---|
| 법인명 (단체명) | ***** | 주식회사 위크루트 |
| 사업자등록번호 | ***** | 134-87-09038 |
| 사업장 소재지 |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 번길 8 1504 호 (정자동, 킨스타워) |
| 대표자 | ***** | 조 강 민 (직인) |

I. 인재검증 (체커루키, 체커오토, 체커프리미엄)

<고객사명> (이하 "위탁자")와 주식회사 위크루트 (이하 "수탁자")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며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수탁자"의 인재검증 자동화 솔루션 체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서비스 내용)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
| 위크루트 체커 (CHECKE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자"의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인재검증 (평판조회, 이력검증) 서비스 프로젝트라 함은 후보자에 대한 인재검증 업무를 말합니다. |

제 3조 (계약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년 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계약 조건 변경 또는 계약 종료에 대하여 별도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의 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 내용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단, 본 계약 종료 시점 이후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관한 상호 권리와 의무는 본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 제①항 계약기간 자동갱신 시 서비스 비용은 홈페이지에 명시된 가격 기준을 따릅니다.

제 4조 (인재검증 서비스 비용 지불)

- 프로젝트 생성을 기준으로 프로젝트 한 건당 서비스 비용은 홈페이지에 명시된 가격에 따라서 상호 협의된 금액으로 과금됩니다.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별도로 추가 인재검증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개별로 합의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한 내용이 본 계약보다 우선합니다.
- 서비스 비용 지불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90일 내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비용을 입금하도록 합니다.

제 5조 (수탁자 관련 운영 규칙)

- "수탁자"는 "위탁자"가 인재검증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솔루션 또는 시스템을 제공하며 제반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 "수탁자"가 인재검증 (평판조회, 이력검증)한 인력의 정보에 대해 "수탁자"는 허위 또는 과장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 "수탁자"가 인재검증을 진행해서 보고한 인력의 정보에 허위 또는 과장이 있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추가 비용 없이 재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수탁자"가 진행하지 않았거나 귀책사유가 없는 인재검증 서비스의 민사상, 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에게 없습니다.

제 6조 (위탁자 관련 운영 규칙)

- ① 일부 서비스에서는 "위탁자"가 필요에 따라 보고서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나 평판참고인(레퍼리) 응답 원본 훼손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지지 않습니다.
- ② "위탁자"가 후보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또는 별도로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지지 않습니다.
- ③ "위탁자"는 인재검증 프로젝트 진행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에 부합한 정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수탁자"에게 등록 또는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지지 않습니다.

제 7조 (기타 서비스 운영규정)

"위탁자"는 다음의 경우 본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제 13조 1항에 언급된 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본 서비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조를 현저히 해태하는 경우

제 8조 (비밀유지)

-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② "수탁자"는 본 계약을 통하여 알게 된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본 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③ "위탁자"는 본 계약을 통하여 알게 된 시스템상 영업비밀이나 "수탁자"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제 9조 (계약의 변경)

- ① 이 계약의 일부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의 내용을 "위탁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수탁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사표시가 없을 시,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을 자동 갱신합니다.
- ② 제①항의 경우 제4조 제②항을 준용합니다.
- 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진행 중인 인재검증 프로젝트(후보자)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변경 전 계약이 적용됩니다.
- ④ 이 계약의 일부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한 내용은 본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 10조 (계약의 해제)

-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2.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 정보를 누설한 때
 3. "위탁자"가 "수탁자"의 계약 이행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조를 현저히 해태하는 경우
 4. 본 계약상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허위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부적절한 거래가 있는 경우
 5. 폐업, 파산,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6.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수표의 부도, 은행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주요 자산(계약금액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이나 보전처분, 강제집행,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8.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 ② 계약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 ③ 본 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11조 (손해배상)

- ① 양 당사자 중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② "수탁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위탁자"에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2조 (분쟁의 해결)

분쟁 발생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문제를 조정하도록 하되, 건당 3천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따르도록 하고, 기타 사건은 분쟁에 대한 소를 제기할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II. 헤드헌팅 서비스 중개 플랫폼 (헌터스)

<고객사명>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위크루트**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며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헤드헌팅 또는 인재추천 서비스를 의뢰하면, "수탁자"는 이에 따라 "위탁자"에게 위크루트 인재추천 서비스 헌터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서비스내용)

"위탁자"가 계약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명 | 서비스내용 |
|----------|---|
| 위크루트 헌터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가 의뢰하는 헤드헌팅 또는 인재추천 프로젝트 • 서비스 수수료 및 보증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가 위크루트 헌터스 시스템 내에서 선택한 리크루터의 제안 수수료율 및 서비스 보증 조건에 따라 다름 (* 프로젝트 각 포지션별로 다름, 시스템에서 자동 반영) - 수수료율은 VAT 별도 기준으로 적용함 |

제 3 조 (계약기간)

서비스 계약기간은 "위탁자"가 위크루트 헌터스 서비스에 가입한 순간부터 유효하고 "위탁자"가 서비스를 탈퇴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제 4 조 (서비스 수수료 지불)

"위탁자"는 "수탁자"의 헌터스 서비스를 계약함에 있어 인재채용이 확정된 후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확정된 연봉에 기준하여 서비스 수수료를 완불한다. 단,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는 시점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 (서비스 수수료 지불방식)

- ① 서비스 수수료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거래은행(기업은행 409-091754-04-011 (주)위크루트/ 우리은행 1005-302-644462 (주)위크루트)에 인재추천 서비스 수수료를 송금하도록 한다.
- ② "위탁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써치펌(사업자 또는 개인) (이하 '기존 거래 써치펌')이 위크루트 헌터스 서비스를 활용하여 인재추천에 성공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를 통하거나 또는 인재추천 서비스 수수료를 직접 "위탁자"의 기존 거래 써치펌에 지급할 수 있다.
- ③ 기존 거래 써치펌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재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는 일체의 법률적 책임이 없다.

제 6 조 (비밀유지)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 일체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수탁자"는 "위탁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제 7 조 (채용인원에 대한 취업 보증기간)

채용된 인원이 보증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보증 조건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단, 추천된 확정자의 귀책사유(자의에 의한 퇴사, 경력사항 허위사실 기재 등)가 아니라 정리해고, 일방적 계약해지, 기업파산 등 "위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퇴직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보증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제 8 조 (추천된 후보자의 별도 채용 금지)

- ① "위탁자"는 위크루트 시스템을 통하여 "헤드헌터"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은 경우, 최초 추천일로부터 1년 동안은 해당 "헤드헌터"를 통한 채용 계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천된 후보자를 직접 채용해서는 안 된다.
- ② "위탁자"는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탁자"가 추천한 후보자를 직접 연락하여 고용계약을 체결(채용)한 경우, 본 계약서상의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크루트를 통해 "수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 ③ 여기에서 추천이라 함은 아래 조건 중 한 개 이상의 경우에 해당한다.
 1. "헤드헌터"가 위크루트 시스템상에서 후보자의 휴대폰 번호를 모두 입력하고 연락처 공개 요청을 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연락처가 인사담당자에게 노출된 경우
 2. 인사담당자와 추천된 후보자가 서로 대면 또는 비대면 접촉이 있는 경우
- ④ "위탁자"가 해당 추천된 후보자의 정보를 별도의 경로를 통해 해당 "헤드헌터"보다 먼저 입수했다는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다. "헤드헌터"는 약속한 기간 동안 추천된 후보자의 입사 여부를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부정 채용에 대한 후보자 또는 "위탁자"로부터 증거 확보 및 입증 책임은 "헤드헌터"에게 있다.

제 9 조 (계약의 변경)

이 계약의 일부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 10 조 (계약의 해제)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① "수탁자"가 업무 수행 중 기밀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
- ② "위탁자"가 "수탁자"의 계약 이행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조를 현저히 해태하는 경우

제 11조 (계약의 효력)

- ①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별도로 합의한 계약 내용은 본 계약 및 "수탁자"의 이용약관에 우선한다.
-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이용약관에 따른다.

제 12조 (분쟁의 해결)

분쟁 발생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문제를 조정하도록 하되, 건당 3천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따르도록 하고, 기타 사건은 분쟁에 대한 소를 제기할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